

법률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

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

2007. 7.



- 본 조치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(2007년 7월 27일 시행)에 따라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 시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을 안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- 본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및 개정법 세부내용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음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(www.1336.or.kr) 내
 사업자 지원창구(사업자개인정보상담
 신청란)에 문의사항 신청

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

- 우리나라 민간분야의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”(이하 정보통신망법)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최근 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이 대량화·다양화되고 법집행 환경도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

- 정부와 국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기업에게는 합리적인 정보보호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**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**합니다.



조치사항

1

이용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으로 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.

●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(제27조의2 제2항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,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
2.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)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,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(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)
4.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(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 한함)
5.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6.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(쿠키 등)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7.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

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는 사항

● 개정법에서는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에 아래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방법
-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
- 개인정보취급위탁 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● 아울러,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관련 내용이 현행법에 비해 간소화되었습니다.

현행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·소속 부서·직위·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 사항 중 선택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·전화번호 등 연락처 - 개인정보보호 고충처리부서의 명칭·전화번호 등 연락처

조치사항

2

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첫화면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.

-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은 홈페이지 첫화면, 점포·사무실의 보기 쉬운 장소, 정기 배포 간행물 등에 게재 또는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언제든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.(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)
-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웹사이트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“개인정보보호정책”, “개인정보보호방침” 등의 용어를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.(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)
- 홈페이지를 통해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을 공개하는 경우, 글자 크기,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.(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)
-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해 공지하여야 합니다.(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)
 - 홈페이지 첫화면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
 - 서면, 팩스, 이메일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
 - 점포·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등

개인정보취급방침 사용 예시



조치사항

3

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
이용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-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 내용 중 **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역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(제22조제1항, 제24조의2 제1항, 제25조제1항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4.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,
 -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(수탁자)
 -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
5.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,
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 -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

조치사항

4

회사의 개인정보취급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다만, 서비스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- 개인정보취급위탁으로 인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3자(수탁자)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보관·처리·이용·제공·관리·파기 등 취급할 수 있게 된 경우,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위 조치사항 ③에 따라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(제25조제1항)

※ 개인정보취급위탁 동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

1.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
2.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

- 다만, 물품배송·A/S처리 등 서비스계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위탁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사용자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(제25조제2항)



조치사항

5

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, 우편, 팩스, 이메일, 전화 등 명시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.

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, 취급위탁, 제3자 제공 등 취급하는 과정에서 **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** 이용자가 동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**명시적 동의를 획득**하여야 합니다.(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)

1. 인터넷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
2.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전달한 후 이용자가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
3. 동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메일을 직접 전송받는 방법
4. 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사이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를 얻는 방법 등

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동의사항 게재 및 동의방법 예시
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(자세한 내용은 "개인정보취급방침"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- ✓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, 실명확인, 가입의사 확인, 연령제한 서비스 이용
 - ✓고지사항 전달, 불만처리 의사소통 경로 확보, 불합배송 시 정확한 배송지 정보 확보
 - ✓신규 서비스 등 최신정보 안내 및 개인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
 - ✓유료정보 이용에 대한 요금결제
 - ✓홍명회원 부정이용 방지 및 비인가 사용 방지
 - ✓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
-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- ✓성명, 주민번호, 생년월일,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메일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IP 정보, 그외 선택항목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- ✓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 - ✓다만, 홍명회원의 부정이용 예방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 해지 후 주민번호를 3개월간 보유할 수 있으며
 - ✓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타법률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존합니다.
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
 - ✓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000보험회사
 - ✓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000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소개를 위한 텔레마케팅에 활용
 - ✓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
 - ✓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제공일로부터 3개월간 보유 및 활용 후 파기
- 개인정보취급 위탁 관련
 - ✓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 : 000텔레마케팅사
 - ✓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: 서비스 제공에 따른 민원처리, 신규상품 및 이벤트 등 최신정보 안내

동의 | 동의하지 않습니다 | 이용자가 동의여부 직접 클릭



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 공개 시에는 정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.

●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의 전자적 표시란?

- 일반적인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어 이용자가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.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의 “전자적 표시”란 이용자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규격화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.

● “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”는 꼭 해야 하나요?

-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(제3조의2제3항)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통해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을 공개하는 경우에 “전자적 표시” 또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● 모든 웹사이트가 “전자적 표시”를 하여야 하나요?

-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,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여행사, 호텔, 학원 등 정보통신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형태의 “개인정보취급방침”과 “전자적 표시”를 병행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.

● “전자적 표시”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“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”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상세한 매뉴얼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의 이용방법은 쉽고 간단하여 전자적 표시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도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소프트웨어 이용하기 ⇨ www.1336.or.kr

